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방법 관련 분쟁조정사례 연구

백영화 연구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단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해지 통지의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필요함

■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 주어야 할 고지의무를 부담함¹⁾
 -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보험료의 산출을 위해 위험률을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임
 -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는 것이 신의칙상 요구된다고도 할 수 있음
-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여야 함
 -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 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나 보험계약의 내용(보험료 등)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함²⁾
-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음

1)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등

- 다만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한편, 만약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함³⁾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해지 사유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에 관한 분쟁조정사례가 있음

- 해당 분쟁조정사례는 피보험자가 ‘간세포 암종’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한 사안이었으며,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음(2019. 3. 19.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조정번호 제2019-1호)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결과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당시 ‘간경화’에 관한 사실^①과 ‘당뇨’에 관한 사실^②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음
 - 이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하면서, ①의 ‘간경화’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만을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②의 ‘당뇨’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피보험자에게 해지 통지를 하였음
 - 그런데 그 이후 해지 사유로 명시되었던 ‘간경화’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
 - 이 경우 ‘당뇨’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⁴⁾

〈표 1〉 제2019-1호 분쟁조정사례의 구체적 사실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보험자가 2015. 12. 22. 보험에 가입한 후 2016. 11. 16. 간세포 암종으로 확정 진단을 받고 2017. 1. 24.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함 • 2017. 2. 17.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과거 ‘간경화’로 진단 받은 사실과 ‘당뇨’로 치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 당시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 이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간경화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 3. 6.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고지의무 위반 사실(간경화)과 보험금 지급 사유(간세포 암종)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2017. 4. 14.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였음 • 그런데 추가 조사 결과, 피보험자가 과거에 의사로부터 간경화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어 보험 가입 당시에는 간경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음

3)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한편 보험회사가 해지 사유로 당뇨병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상법상 해지권 행사기간(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였음

- 이에 보험회사는 ‘간경화’와 관련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보험자에게 암진단비를 지급하였음
- 이후 피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해지된 계약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보험회사에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당뇨’로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것임

● 즉, 보험회사가 ‘간경화’에 관한 사실을 불고지했음을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당뇨’에 관한 사실을 불고지했음을 이유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피보험자 측의 입장), 아니면 해지 통지문에 당뇨에 관한 사실을 특정해서 명시하지 않았을 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다는 취지가 피보험자에게 전달된 이상 종래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당뇨를 포함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것으로 해석되어 보험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보험회사 측의 입장)가 문제된 것임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단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해지 통지의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단지 ‘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만을 기재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것임
- 또한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조항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고 정하고 있는데,⁵⁾ 이에 의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만 통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음
 - 위 약관 조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밝힌 다음, 이러한 사실이 해당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아울러, 2개 이상의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을 기준으로 고지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밖에 없고,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 역시 각각의 불고지 사실을 보험회사가 안 날을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보험회사는 2개 이상의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것임
- 결국, 해당 사안의 경우 보험회사는 ‘간경화’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을 뿐

5)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4조 제2항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뇨’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보험회사가 ‘당뇨’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해지하겠다고 언급한 시점에는 이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보험계약은 해지된 바 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본 것임

■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나 학계의 다수설의 입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해지 통지의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그 근거가 된 해지 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 사유를 명시할 것이 요구되며, 어떠한 해지 사유에 의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다른 해지 사유에 의한 것으로 전용(轉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2004다55384 판결⁶⁾)
 - 해지 사유마다 별개의 해지권이 발생하는 점, 해지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해지권의 행사 또는 해지권의 전용을 허용한다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 또한 학계에서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임⁷⁾
-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 나아가 약관 조항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그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대상이 되는 사실이 해당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와 계약의 처리 결과, 그리고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해지 통지를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전부 적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음 **ki ri**

6) 위 대법원 판례는 ‘계약 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전용하고자 한 사안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에 있어 2개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 각 위반 사실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의 전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임

7) 정동윤·손주찬, 『주식 상법』; 한기정, 『보험법』; 박세민, 『보험법』; 임용수, 『보험법』